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신영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470

발의연월일: 2025. 1. 13.

발 의 자:신영대·전재수·김정호

박수현 • 윤준병 • 김종민

문금주 • 이훈기 • 황명선

문정복 • 서삼석 • 정을호

한준호 · 염태영 · 김기표

김용만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활동지원인력이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 원급여비용이 지급되는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면서, 활 동지원기관이 매우 부족한 지역에 수급자가 거주하는 경우 등에 한하 여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음.

그런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활동지원인력의 기피 현상으로 활동지원인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, 이는 가족에게 돌봄 부담이 전가되어 가정의 경제활 동 및 생계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.

이에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가족 간 활동지원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함으

로써 활동지원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줄이고자 함(안 제30조제3항 단서).

법률 제 호
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0조제3항 단서 중 "활동지원기관이 매우 부족한 지역에 수급자가 거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"을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활동지원기관이 매우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수급자가 거주하는 경우
- 2. 수급자가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중증장애 인으로서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경우
- 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30조(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취 제30조(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취 소 및 자격 정지 등) ①·② 소 및 자격 정지 등) ①・② (생 략) (현행과 같음) ③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 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활동지원인력이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본인의 가족인 수 급자를 대상으로 이 법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비용이 지급되는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것을 ----다음 각 호의 제한할 수 있다. 다만, 활동지 원기관이 매우 부족한 지역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-----수급자가 거주하는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한 하지 아니한다. 1. 활동지원기관이 매우 부족한 <신 설>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수급자가 거주 하는 경우 2. 수급자가 장애 정도가 심하 <신 설> 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중증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

| | 해당하는 경우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|--|--|
| <u><신 설></u> | 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| | | |
| | 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| | | |